

제 호

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「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